

◎해양수산부령 제516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1. 개정이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지정한 신종 수산생물질병을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추가 지정하고, 수산생물 검역과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의견수렴 대상에 수출국을 추가하는 등 국제 위생·검역(SPS) 규범의 이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정검역물의 범위에 양서류를 추가하고 수입금지물품 등에 대한 조치명령 이행기간을 현실화하는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생물전염병 추가 지정(안 제2조)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을 수산생물질병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를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나. 국제 위생·검역(SPS) 규범의 이행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안 제6조, 제30조 및 제37조)

수산생물 검역과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등에 관한 의견수렴 대상에 수출국을 추가하고, 전자문서로 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전송한 전자문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를 확대하고 수출국에 대한 현지실사 근거를 마련함.

다. 지정검역물의 대상 확대(안 제25조)

지정검역물 대상에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양서류를 추가하여 해외에서 유입될 수 있는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라. 검역 불합격품에 대한 명령 이행기간을 현실화하고 연장 횟수 명시(안 제27조)

수입금지물품 등에 대한 화주의 조치명령 이행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9. 1. ~ 10.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급성간체장괴사병”을 “급성간체장괴사병,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기관·단체”를 “관계기관·단체, 수출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호 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을 “급성간체장괴사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16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25조제2호 중 “갑각류”를 “갑각류·양서류”로 한다.

제27조제2항 본문 중 “15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연장”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을 “제출해야 하며, 전자문서로 검역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서류는 검사 당일까지 원본을 제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전송한 전자문서가 확인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3.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등 국제기구에서 정하지 않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경우

4.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수출국의 검역증명서 위생조건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제2호의 위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출국과 협의하여 해당 국가의 수산물품질관리체계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제37조의8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연월일”을 “연월일 및 유효기간(7일 이내로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산생물의 어종, 연령, 마릿수, 중량, 수온, 병명
2. 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또는 대표자, 생년월일, 면허 또는 허가번호, 사업장명, 주소, 전화번호
3. 의약품의 명칭, 성분명, 수량(포장단위), 용법, 용량, 투약일수(30일 이내로 한다), 휴약기간
5. 수산질병관리원의 명칭, 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제37조의13제1항 중 “제출”을 “제출해야 하고,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로 한다.

별표 5의2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다목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에 한 행정처분은 위반행위의 횟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별지 제24호의7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11서식 중 “즉시”를 “5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중 “즉시”를 “의뢰의 내용에 따라 다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검역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하기 위해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이행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검역을 신청한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5의2 제1호라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처 방 전

발급 연월일	년 월 일	교부 번호	
-----------	-------	-------	--

※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일간으로, 유효기간 내에 약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수산생물	어종		수산생물 소유자 (관리자)	성명(대표자)	
	연령			생년월일	
	마릿수			면허(허가)번호	
	중량			사업장명	
	수온			주소	
	병명			전화번호	
수산질병 관리원 (동물병원)	명칭		처방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면허번호	
	신고번호			성명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성분명(권장 제품명)	수량 (포장 단위)	1회 투여량	투여 횟수(일)	투여 일수	휴약 기간	비고
권장제품						

의약품 판매명세			
판매기관 명칭			대표자 성명
판매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판매연월일			비고

판매 제품명(제조사)	규격(포장 단위)	판매량	휴약기간	유통기간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14조의2(역학조사대상 수산생물전염병) 법 제11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전염병” 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생물전염병을 말한다.

1. 잉어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2. 그 밖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역학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생물전염병

제16조(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및 투약) ① ~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또는 투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역학조사대상 수산생물전염병) -----

1. -----
급성간체장괴사병

2.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제16조(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및 투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

제25조(지정검역물의 범위) 법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
한다.

제25조(지정검역물의 범위) --

-----.

1. (생 략)
2.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
사용 수산동물 중 어류·패류
·갑각류

1. (현행과 같음)
2. -----

갑각류·양서류

- 3.·4. (생 략)

- 3.·4. (현행과 같음)

제27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① (생
략)

제27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① (현
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반송 또는 소
각·매몰 등의 명령을 받은 화
주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명령
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
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
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② -----

30일 -----
-----.

1. ~ 9. (생략)

② ~ ④ (생략)

제37조(수입위험분석의 실시)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입위험분석을 해야 한다.

1.·2. (생략)

<신설>

<신설>

3. (생략)

② (생략)

<신설>

을 생략할 수 있다.

1.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수입위험분석의 실시) ①

-----.

1.·2. (현행과 같음)

3.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등 국제기구에서 정하지 않은 수산물질병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경우

4.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수출국의 검역증명서 위생조건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5.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제2호의 위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출국과 협의하여 해당 국가의 수산물질병 관리체계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